



제24-0163호

안전인증서

(주)가스디엔에이

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193번길 101

위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아래의 품목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·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품 목

Gas Detector

형식 · 모델 / 용량 · 등급 / 인증번호

형식·모델	용량 · 등급	인증번호
DA-600S	DC (20~30) V, 150 mA Ex tb IIIC T85℃ Db (IP6X)	24-GA2BO-0163X

인증기준

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22호)

인증조건

Tamb : -20℃ ~ +50℃, 뒷면참조

2024년 4월 12일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





인 증 조 건

1. 제조공장

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193번길 101에 위치한 (주)가스디엔에이에서 생산한 제품 중 아래 인증범위의 제품에 한함.

2. 제품개요

본 제품은 분진 방폭형 구조로 알루미늄 합금의 CASE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가스를 검지하기 위한 기기임. 분진폭발 위험지역(21종 및 22종 장소)에서 설치 및 사용이 적합함.

3. 인증범위: 본 인증서는 아래의 형식번호에 한하여 유효함

품목 : Gas Detector, 형식 : DA-600S

4.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

- 가. 폭발성 분위기가 존재할 경우 개방하지 말 것
- 나. 케이블 인입부는 동등 이상의 방폭 인증을 받은 케이블 글랜드 또는 블랭킹엘리먼트를 사용할 것
- 다. 접합부는 수리 대상이 아님. 접합부 치수에 관한 정보는 제조사에 문의할 것
- 라. 사용설명서 및 KS C IEC 60079-14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사용할 것

5. 인증(변경)사항

6. 그 밖의 사항

안전인증품의 품질관리, 확인심사 수검, 변경사항 신고 등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준수